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영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585

발의연월일: 2025. 4. 4.

발 의 자:신영대·허성무·홍기원

전재수 · 이해민 · 김정호

유준병 • 한민수 • 강준혁

임광현 · 김기표 · 김용만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헌혈 증진 및 헌혈자 예우를 통해 헌혈의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헌혈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이 소정의 기념품, 표창으로 제한 되어 있어 다회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 적이 있음.

특히, 헌혈은 인공적으로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아,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임을 고려할 때 다회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건강검진 및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헌

혈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예우를 표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8 제3항 신설). 법률 제 호

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8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의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8(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	제4조의8(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
지원) ①・② (생 략)	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③ 제2항의 헌혈에 관하여 특
	히 공로가 있어 보건복지부장
	관이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
	거나 표창을 한 자에게는 대통
	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
	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의
	료 지원을 할 수 있다.
③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